(16-006) ○○○○ ○○○-○번지 석축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○○ ○○○-○번지 신축현장			
사고일시	2016년 02월 18일(화) 20:26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	사고 종류	붕괴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인명피해 없음	
장비 손실	_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🔾)

① 공사개요

o 공사종류: 공동주택

o 규모: 지하 0층/지상 5층(기초방식 Mat기초)

사고개요

② 사고경위

o 석축하단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(상도1동 419-2) 신축을 위하여 바닥 굴착 및 Mat 기초 타설(3일 경과) 후, 강우 등에 의한 지반 연약화로 부지 인근 석축(메쌓기 방식)이 현장측으로 붕괴됨.

③ 사고원인

- o 기초 굴착과 진동 등으로 석축의 횡방향지지력이 약화되어 붕괴.
- o 석축 옹벽이 강우 및 해빙으로 인한 석축벽면이 연약해져 붕괴 발생된 것으로 추정 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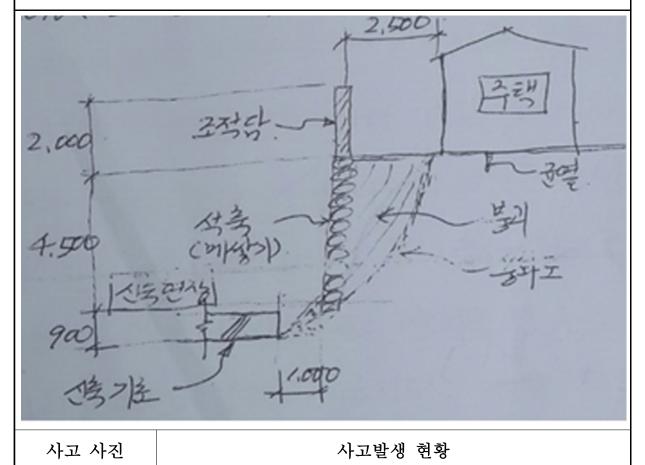
- o 땅파기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밑받치기 지보(언더피닝) 등의 적정공법으로 보강 하여야 한다.
- o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 하여야 한다.

재발방지 대책

- o 말뚝박기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.
- o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.
- o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.
- o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° 지지각을 침범해서 땅파기를 해서는 안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_____I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